

【특집 · 국어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국어정책과 국어 기본법의 방향

— 국어 기본법 제정 취지와 시안의 열개 —

김갑수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장*

1. 세계화와 언어정책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맞닥뜨린 큰 변화의 물줄기 중 하나는 세계화이며, 세계화하면 우선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문화적 제국주의이다. 과거 물리적인 힘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제국주의가 문화적 제국주의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 서구의 지배적인 가치가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이식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세계의 언어 사용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세계화에 따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언어들에 점진적으로 영어 등 우세한 언어로 대체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유네스코 등 많은 연구기관과 언어학자들은 말한다. 노벨상 작가 카밀로 호세 셀라는 “21세기에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4개 언어만 남고 나머지는 지역적 방언이나 시어(詩語)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견한 바 있다.

* 2003년 6월 13일자로 국어정책과장에서 예술진흥과장으로 전보됨.

6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2003년 여름)

언어를 단지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만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굳이 국어를 보전하고 잘 쓰려는 노력이 의미 없게 될지도 모른다. 조금이라도 빨리 영어를 익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라 인류의 언어들이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언어는 되살아나고 있는 언어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일랜드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이런 상반된 현상이 생기는 걸까? 그것은 바로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에 따라 서구·강대국 중심의 문화적 지배에서, 비서구·약소국과 소수민족들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문화적 주권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언어는 한 민족 문화의 핵심일 뿐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도 귀중한 살아 있는 문화로서 결코 경제적으로는 따질 수 없는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전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유엔환경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언어를 위한 기금’에서는 인류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들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프랑스나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일찍부터 국어보전 및 육성에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하여 강력한 국어 보전 정책을 펴고 있다.

- 프랑스 : ‘프랑스어 정화법(라바도리올법)’(‘76)과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투봉법)’(‘94) 제정
 - 광고와 상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함.
 - 프랑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벌금 부과
- 캐나다(퀘벡주) : ‘언어 정화법’ 제정(‘88)
 - 사복 언어 경찰관 편성 : 필요 이상 외국어를 사용할 때 벌금 부과
 - 영어 간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랑스어의 1/3 크기로 제한
- 폴란드 : ‘국어법’ 제정(‘00)
 - 상품에 폴란드어 상표 부착을 의무화함.

2. 우리의 국어정책 환경

우리 민족에게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민족의 혼과 정신이 배어 있는 존재의 집과 같은 것이어서 언어의 성장과 소멸은 곧 민족의 흥망을 의미한다.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으로서 민족문화를 꽃 피워온 뒤에는 바로 국어의 힘이 있다. 국어정책은 경제위기나 전쟁의 위협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민족의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어는 국제적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언어이다. 세계 언어의 수는 대체로 4천~5천 개 정도로서 이중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언어는 138개이며 사용자가 10만 이상인 언어는 396개인데 이중 국어는 사용 인구수로 볼 때, 세계 13위에서 15위 정도에 해당하는 주요 언어이다.(2002년 말 기준, 국어 사용 인구수 약 7,500만 명)

외국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국어 학습 열기가 확산 추세에 있어 현재 54개국의 394개 대학에서 한국어문학과나 한국 강좌를 개설 중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산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잠시라도 말과 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면서도 습관처럼 사용할 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국어가 우리 문화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국어 환경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의 국어 훼손 사례는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락 방송에서는 욕설·비속어, 신조어·유행어 등이 남발되고 있다. ‘대답’이 ‘리빨’로, ‘내용이 없다’란 뜻이 ‘냉무’로 ‘감사합니다’가 ‘감좌~’로 쓰여지는 등 기존 언어 체계를 파괴하고 세대간 의사 소통을 저해하는 통신 언어의 오·남용도 심각한 상태다.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번역문체의 사용이 증대되고, 국적불명의 외래어·외국어 간판 및 광고가 남용되는 등 올바른 국어 생활을 가로막는 언어 사용 환경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어 교육 과열에 따른

국어교육과의 부조화 문제도 큰 문제다. 과거 천년이상을 한자어와 일본어에 밀려 국어가 위협을 받았다면 이제는 영어가 새롭게 국어를 위협하는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과연 이런 위협에 대응하여 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는가?

우선 법제를 보면, 국어 사용에 관한 규정은 특허법, 상표법, 도로표지규칙, 옥외 광고물 관리법 등 약 120여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지만 국어 사용의 원칙에 관한 기본 법령이 없어 일관된 원칙이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어 발전, 진흥에 관하여는 현재 ‘문화 예술 진흥법’에 몇 조항이 있으나 국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단일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효과적인 국어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문화의 시대에는 문화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모국어의 보존과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될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어정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법만으로는 국어를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국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3. ‘국어 기본법’ 제정의 추진 과정

국어 기본법 제정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어관련 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오던 중 2002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문화관광부에서 국어 발전 종합 계획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국어 기본법’의 제정계획을 제기하였다.

당초에는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하여 발표하였으나,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법제정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2003년 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3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보고하였고 바로 국어 기본법 입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어학계에서 홍윤표, 민현식, 권재일 세 사람과 법 체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운영실장을 위원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의 김갑수 과장을 간사로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120여 개 중에서 국어, 한국어, 한글, 한자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검토, 점검하고 구체적인 법조문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법 초안을 지난 4월 2일 언론에 공개하고 곧 바로 공청회(4.10, 세종문화회관)를 개최한데 이어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4. 국어 기본법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

국어 기본법의 제정은 바로 국어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인 한국인의 정체성은 언어, 문자, 고유의 의식주 문화(음식, 의복, 주거) 및 민속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영속적인 것은 바로 ‘언어’이다. 의식주도 변하고 민속도 변하는 것이지만 고유 언어는 언어의 부분적인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민속 등의 가변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도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언어는 국가나 민족 최후의 보루이고 국가나 민족 정체성의 최후 상징이므로 존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 기본법 제정의 근거는 국어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는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프랑스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즉,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화국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근본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 Art. 1ed. Langue de la Republique en vertu de la Constitution, la langue francaise est un element fondamental de la personnalite et du patrimoine de la France.)

이렇게 국어의 존엄성에 기초한 국어 기본법 제정안이 지향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 사용의 목적은 소통 기능, 친교 기능, 정보전달 기능, 미적 기능 등을 드는데 이러한 기능의 공통 바탕은 결국 올바르게 사고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는 이러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는 언어 능력을 문해력(literacy, 문식력, 문식성, 언어 소양)이라고 표현하여 문해력 증진을 국어 교육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국어 기본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창조적 사고력은 곧 전 세계적인 국어정책, 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처럼, 국어 기본법도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문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 문화 발전은 정치, 경제, 언어, 문학, 예술, 과학, 체육 등의 제반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국어 기본법은 이 여러 영역 중에 언어문화 영역에서 국어 문화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민족 문화 창달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선 국어 사용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능력이 중시되면서 제 나라말을 경시하는 경향이 개인, 학교, 기업, 언론 등에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국어 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려면 국어를 사용하는 일을 새삼 강조하여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어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어는 저절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국어 연구자, 교육자, 공무원, 언론·출판인, 기업인 등 국민 누구나 국어 발전의 주체가 되면서 연구·교육·언론 출판 기관 및 정부, 기업 등의 모든 기관이 국어 보전과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경제가치를 계산하여 언어 경쟁력을 설정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쟁력은 국력에 비례하는데 가령, 오늘날 동남아에 부는 이른바 ‘한류’는 한국과 한국민, 국어에 대한 경제 가치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경쟁력은 국어의 경쟁력과 동등하므로 국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과학, 예술, 체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

5. ‘국어 기본법’ 제정안의 입법체계와 주요 내용

점점 악화되어 가는 국어 사용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는 규제 및 강제적으로 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잘못된 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다.

우선, 제정안에서는 주로 국민의 언어생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어를 보전·발전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나 처벌 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과연 이러한 선언적 규정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어 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7장 29개 조문과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 시책의 수립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12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2003년 여름)

제4장 국어의 국외 보급

제5장 국어진흥기금

제6장 국어 능력의 향상

제7장 보 칙

부 칙

이 그 내용이다.

5.1. 국어 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규정

-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가는 건전한 국어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국가는 정신·신체상의 장애 등을 사유로 언어 사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이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를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담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각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기본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제9조에서는 국회에 대한 연차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다.

“정부는 매년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과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10조에서는 국어 문화 실태의 조사 및 국어 문화 지수의 산정, 발표 의무를 규정하였다.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 문화 지수를 산정, 발표하도록 함”

국어 활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며, 이 중에서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국어 사용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등은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의 일상생활화로 인하여 종이에 쓰던 것을 컴퓨터 상에서 직접 글을 쓰고, 종이책을 읽는 것에서 화면 상에서 읽거나 보는 것으로 변화하는 등 엄청난 국어 사용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하게 되며, 어문 규범의 준수 사항도 크게 변화하고 남북관계의 변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국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미래의 국어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국어 사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리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만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국어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국어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어 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에게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 제12조에서는 국어 책임관 임명제도를 규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 계획의 시행과 국어 사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함”

14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2003년 여름)

국어 책임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부가 수립하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각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총무과, 서무과 등의 조직이 있으므로, 서무계장 등이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당장은 예산 소요 등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 책임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일정한 급수 이상을 취득한 자로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책임관, ‘여성 발전 기본법’에 따른 여성 정책 책임관 등이 이미 운용 중에 있다.

5.2. 국민의 언어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정한 규정

- 제13조에서 언어 생활에서 국어 사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언어생활은 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하여야 함”

“국가는 불필요한 한자어,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에 대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함”

- 제17조에서는 공용문서 등의 한글 사용 원칙을 규정하였다.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 법규 문서, 그 밖의 서류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함(제1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따로 정하는 시 기까지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음(제2항)”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관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법령안의 어문 규범 준수와 표현 순화에 대하여 문과관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음(제3항)”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래, 정부의 일관된 문자 정책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 제정안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다. 즉, 법률안 제15조에서는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넣어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대상 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특히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규 문서는 그 해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리 어문 규범 준수와 표현 순화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제2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주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제17조 규정에 대하여는 약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와 같이 전문 32자로 되어 있는 법이다. 이 문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국어 기본법’ 하니까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국어 기본법은 국어의 보존 및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적극적인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5.3. 어문 규범의 제정과 준수에 대하여 규정

- 제14조에서는 어문 규범의 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고시함”

- 제19조에서는 어문 규범의 준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공공 기관, 언론 기관,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문 규범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국어 사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항)

“제1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 기관, 언론 기관, 기업, 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정요구 사실과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음(제3항)”

- 제16조에서는 국어 관련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검정 및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현재 국어 어문 규범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편찬하기 때문에, 교과서(심지어 국정 교과서조차)에 국어 어문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등을 무시한 교과서가 일부 채택된 바 있으며, 특히 국정 교과서

가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7차 교육과정의 국어에 관한 교과서의 편찬 작업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 순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과서 편찬을 도왔기 때문에 어문 규범 준수 여부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는 문화관광부와 교과서를 편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의 취지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5.4. 국어의 국외 보급과 진흥에 관한 규정

- 제21조에서는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국가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재 지원 및 국어 전문가 양성 등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제22조에서는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하였다.

“국어의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함”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서는 국어에 대한 언어 정책, 언어 교육, 그리고 언어 사용(공용어)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또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국어의 세계적인 보급을 위한 전담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재)‘한국어 세계화재단’이 있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인적, 재정적, 구조적 한계로 그 막중한 기능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외교통상부에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설립되어 있으나, 국

어의 국외 보급과 일부의 관련성은 있어도 국어의 국외 보급을 전담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어 보급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되 기존의 국어정책 담당 부서나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제국어진흥원’은 국어의 국외 보급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기획, 국어의 국외 보급 실태 조사, 한국어 교사 양성 및 교사 재교육, 해외 지원·협력 사업, 국제 학술대회 개최, 국어 교수 파견·초청 등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 제23조에서는 국어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다.

“국어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함”

“기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하고 운용하되, 국제국어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어의 진흥은 국내외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국어 생활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하는가에 그 성공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효율적인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민간이 이에 참여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5.5.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규정

- 제27조에서는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근거와 우대 방안을 규정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여 평가하며 이를 통하여 국어 능력 검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수준의 국어 능력 자격 취득자에게는 입학, 취업 또는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우리 삶과 사회 및 문화 생활에서 말과 글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자각과 인식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뜻만 통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국어의 오용은 의사소통의 방해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은 국민간의 문화 정보 전달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특히 언론계, 공공기관, 출판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어능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 제28조에서는 국어 상담소의 설치 장려를 규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및 직장에서 학생 및 직원의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의 자립을 위하여 국어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 ‘국어 상담소’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문장 상담소(writing center)’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고급 예비 지식인들의 문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거의 모든 대학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장 작성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오늘날 영어가 실질적인 세계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법률안에서는 국어 상담소를 민간에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대신, 민간에서 설립할 때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법안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

국어 기본법 초안의 입안과정 및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즉,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어의 사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나친 국어의 사용 강제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국어 기본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국어 기본법 제정 안에서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어의 진흥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하였다.

반면, 국어 기본법이 너무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법률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국어 사용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다. 규제 및 강제, 또는 처벌 조항을 두어야 할지, 둔다면 어느 정도에서 규정해야 할 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는 국어, 한국어 등 기본 용어의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다

국어·한국어 등의 용어는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률에서 해석 상 논란을 일으킬 소지는 적으므로 법률안에서는 입법기술 상 국어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자국어에 대해 ‘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있으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최근 일본도 국어학회의 명칭을 일본어학회로 개칭하는 등 논란이 있으며 우리 국어도 그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법의 명칭(국어 기본법, 한국어 기본법), 기본용어의 사용에 관해 다양한 의견(국어, 한국어, 우리말글, 한국어문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논의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문자정책과 관련하여 법률안에서는 국민의 언어생활은 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공용문서의 한글 작성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 법규문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자 등 외국 문자의 병기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한글 전용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반대 견해와 함께, 동시에 한자 사용을 등한시하는 것이라는 일부 한자 혼용론자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한글 전용’인가 ‘한자 혼용’인가와 같은 문제에 매달려 실제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우리의 힘을 너무 소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국제국어진흥원과 관련된 논쟁도 있다. 국제국어진흥원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전담 기관(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국어의 국외 보급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구 신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국립국어연구원과의 기능 중복 문제는 없는 가라는 점이 제기 되었다. 특히, 재외 동포에 대한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이견 제시가 예상된다.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국어시험은 입시용 학력 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실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중시하고 국어를 경시하는 풍조, 신세대의 어문 사용 능력 약화 등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실효성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이 검정 시험의 결과를 입시·취업 등에 우대토록 할 것인지, 단순한 국어 능력 측정에 그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언어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신문, 방송, 잡지, 광고 등의 국어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이에 대해서는 상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방송법 등 개별 법령 및 방송위원회 규칙(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 기본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법률안 제17조 제2항에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여론 수렴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과 관련하여 국어 기본법에서 관련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국경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률에서 국경일을 지정하는 것은 입법 형식이나 체계 상 문제가 있으므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

7. 앞으로의 입법 과정

이 법안은 국어학계와 입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기존의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만들었지만, 앞으로 관련 단체 등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거칠 것을 필요로 한다.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법안을 확정하고, 향후 입법 과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에 금년 12월경에 임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다 빠른 법 제정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화자원인 국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장기 발전계획이 없었다. 이번 국어 기본법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국어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굳건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번 국어 기본법 공청회 때(4.10, 세종문화회관) 어느 분은 “이제는 국어를 단순히 수호하고 보전한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병기처럼 키우고 다듬어 외국에 수출하고 보급한다는 공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국어 기본법은 그런 점에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조규태(2003), “영어 공용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사랑 105집』, 서울 : 외솔회.

문화관광부(2003),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자료”.